[상담일시] 2023. 10. 16 [상담유형] 방문

[**상담요청자**] 성명: 000 직급: 3직급 소속: 인사처

### [상담 내용]

외부강의등 요청한 기관이 국가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상담 결과]

- 정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 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며 해당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 참고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u>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u>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 인] 2023. 10. 16

[상담일시] 2023. 10. 22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000 직급: 3직급 소속: 안전관리실

## [상담 내용]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요?

###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 인] 2023. 10. 22

[상담일시] 2023. 11. 12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000 직급: 2직급 소속: 원자력총괄기술처

## [상담 내용]

주말에 모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서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는데 청탁금 지법 위반인가요?

### [상담 결과]

口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거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경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

#### 〈 참고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 략) 7. <u>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u>

[확 인] 2023.11.12

[상담일시] 2023. 11. 17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OOO 직급: 4직급 소속: 품질경영처

## [상담 내용]

외부강의등을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사례금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신고를 언제 해야하나요?

#### [상담 결과]

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참고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때 상세 명세 또는 <u>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u> 경우에는 <u>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u>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확 인] 2023. 11. 17

[상담일시] 2023. 12. 13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000 직급: 4직급 소속: 조달처

### [상담 내용]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임 팀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여부 문의

#### [상담 결과]

- 미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미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계약 체결 담당자 등을 지휘 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u>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u>

[확 인] 2023. 12. 13